

#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7
----------	-----

제출년월일 : 2000.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개정이유

-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된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道』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지역정보화협의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지역내 정보화 역량을 결집하는 기구로 활용
  - 협의회장 등 회원의 직위를 상향조정
-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권고안 수용
  - 중앙계획과 지방계획의 수립시기 연계를 위해 정보화추진 시행계획의 수립시기를 조정
  - 주민정보화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대통령 훈령으로 운영되던 “정보화책임관”의 설치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

## 2. 주요골자

- “정보화책임관” 신설
  - 용어정리(제2조의4호)
  - 임명·임무, 부정보화책임관(제9조의2)
-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시기를 조정(제5조제2항)
  - 매년 2월말까지 ⇒ 매년 11월말까지

○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명칭과 구성원을 변경(제7조)

-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 지역정보화협의회
- 협의회장을 행정부지사 ⇒ 도지사
- 회원 중 부시장·부군수 ⇒ 시장·군수

○ 주민의 정보화교육 외부기관 위탁 근거규정 신설(제29조제2항)

○ 조례 시행을 위한 필요사항 규칙에 위임조항 신설(제33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보화책임관”이라 함은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총괄하는 핵심간부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제2항중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지역정보화협의회”로 한다.

제5조제2항중 “2월말”을 “11월말”로 하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지역정보화협의회”로 한다.

제5조제3항중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지역정보화협의회”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역정보화협의회) ①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 지역정보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장은 도지사가 되며, 회원은 지역내 유관기관·기업체·학계·언론·금융·민간단체 등의 장, 도의회의원, 시장·군수, 관할 지방체신청장, 업무관련 실·국장 중에서 협의회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통신과장이 된다.

⑤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실무협의회를 두며,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지역정보화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협의회 운영과 지역정보화실무협의회 및 지역정보화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4호중 “위원장”을 “협의회장”으로 한다

제9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정보화책임관) ①도지사는 지역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으며, 정보화책임관은 각종 정책과 정보화와의 연계를 종합 조정할 수 있는 핵심간부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2. 각종 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 평가
3. 각종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시 정보화와의 연계·조정
4. 각종 행정처리과정의 정보화 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 절차의 간소화 추진

③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해 공무원 또는 민간분야의 전문가로 부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제11조제5호중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지역정보화협의회”로 한다.

제29조 본문을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외부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32조중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를 “지역정보화실무협의회”로 하고 “지역정보화촉진분과위원회”를 “지역정보화분과위원회”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현	행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3.(생략)</p> <p>&lt;신설&gt;</p> <p>제4조② _____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_____</p> <p>제2장 지역정보화의 촉진</p> <p>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생략)</p> <p>②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③ _____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_____</p> <p>제7조(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p> <p>①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p> <p>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자치행정 국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 기업체, 학계, 언론, 금융, 민간단체 등의 장, 부시장·부군수, 도의회의원, 업무관련 실·국장 및 관할 지방채신청장으로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한다.</p> <p>④협의회에 가사를 두되, 가사는 정보화담당관이 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3.(현행과 같음)</p> <p>4. "정보화책임관"이라 함은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촉발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을 말한다.</p> <p>제4조② _____ 지역정보화협의회 _____</p> <p>제2장 지역정보화의 촉진</p> <p>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현행과 같음)</p> <p>② _____ 11월말 _____</p> <p>_____ 지역정보화협의회 _____</p> <p>③ _____ 지역정보화협의회 _____</p> <p>제7조(지역정보화협의회)</p> <p>①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 지역정보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p> <p>③협의회장은 도지사가 되며, 회원은 지역내 유관기관·기업체·학계·언론·금융·민간단체 등의 장, 도의회의원, 시장·군수, 관할 지방채신청장, 업무관련 실·국장 중에서 협의회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한다.</p> <p>④협의회에 가사를 두되, 가사는 정보통신과장이 된다.</p>		

현행	개정안
<p><u>⑤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를 두며,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지역정보화촉진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u>⑤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실무협의회를 두며,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지역정보화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u>⑥협의회의운영과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 및 지역정보화촉진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⑥협의회의운영과 지역정보화실무협의회 및 지역정보화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8조(협의회 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생략)</li> <li>4.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li> </ol>	<p>제8조(협의회 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현행과 같음)</li> <li>4.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u>협의회장이</u> 부의하는 사항</li> </ol>
<p>&lt;신설&gt;</p>	<p>제9조의2(정보화 책임관) ①도지사는 지역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으며, 정보화책임관은 각종 정책과 정보화와의 연계를 종합조정 할 수 있는 핵심간부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p> <p>②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각종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li> <li>2. 각종 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 평가</li> <li>3. 각종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시 정보화와의 연계·조정</li> <li>4. 각종 행정처리과정의 정보화 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추진</li> </ol> <p>③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해 공무원 또는 민간분야의 전문가로 부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제11조(기능)지역정보화본부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4.(생략)</p> <p>5. <u>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u>의 사무</p> <p>제29조(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①(생략)</p> <p>&lt;신설&gt;</p> <p>제32조(수당 등)——<u>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u> ——<u>지역정보화촉진분과위원회</u>——</p> <hr/> <p>&lt;신설&gt;</p>	<p>제11조(기능)지역정보화본부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4.(현행과 같음)</p> <p>5. <u>지역정보화협의회</u>의 사무</p> <p>제29조(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①(현행과 같음)</p> <p>②<u>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의무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u></p> <p>제32조(수당 등)——<u>지역정보화실무협의회</u>—— <u>지역정보화분과위원회</u>——</p> <hr/> <p>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관 계 법 령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 조성 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이하 "정보화촉진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화추진위원회)

- ①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 ②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한다.
-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장이된다

제11조(공공정보화등의 추진)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 재정, 기술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 및 법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매년 5월말까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④시행계획은 매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말까지 확정한다.

□ 대통령 훈령 제73호(1998. 9. 11)

제5조(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①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2. 각종 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 평가
3. 각종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시 정보화와의 연계·조정
4. 각종 행정처리과정의 정보화 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추진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화책임관이 제1항 각호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화책임관의 임무수행을 적극 독려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책임관의 자격)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자질을 갖춘자이어야 한다.

1. 당해 기관의 실제 업무처리과정 전반에 정통한 자
2. 정보화분야에 관한 넓은 이해와 안목을 가진 자
3.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전반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

제8조(정보화책임관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훈령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임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직위인 기획관리실장 기타 기획관련 부서의 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특성상 다른 부서의 장이 더욱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는 국장급이상의 직위를 지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된 직위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보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책임관의 임무를 수행할 직위를 지정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에 공무원을 보할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